[참고] 화장품에서의 특정성분 특기표시에 대해(1985년 통지에서 변경사항)

|  |  |
| --- | --- |
| 신규 | 기존 |
| 화장품에서의 특정성분 특기표시에 대해  각 도도부현/보건소설치시/특별구 약무주관부(국)장 귀하  2025년 3월 10일  후생노동성 의약국  감시지도/마약대책과장  화장품에서의 특정성분 특기표시에 대해서는 “화장품에서의 특정성분 특기표시에 대해” (1985년 9월 26일자 약감 제53호 후생성 약무국 감시과장 통지)에서 취급을 표현하고 있지만, 화장품 광고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귀기관 산하 관계업자에게 주지를 바랍니다.  더불어, 본 통지로서, “화장품에서의 특정성분 특기표시에 대해”(1985년 9월 26일자 약감 제53호 후생성 약무국 감시과장 통지)는 폐지합니다.  아래  특정성분 특기표시란 상품에 배합된 성분 중 특정성분을 표시하는 것이다.  화장품에서 특정성분을 특기표시하는 것은 마치 그 성분이 유효성분인 것 같은 오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하지 말 것.  단, 아래 유의사항 및 Q&A에 근거하여, 특정성분을 특기표시 할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I. 유의사항  1. 특정성분의 특기표시  (1) 특정성분을 특기표시 할 경우, 배합목적을 반드시 병기할 것. 더불어, 배합목적은 화장품의 효능효과 및 제제기술에 근거한 표현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실증된 것일 것.  (2) 특정성분을 사진, 디자인(영문 등의 표시를 포함한다)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OO(성분명) ΔΔ(배합목적)” 등으로 배합목적과 함께 성분명도 기재할 것.  2. 특기표시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  (1) 특정성분의 명칭에 “약”이라는 글자가 포함되는 것  예: “생약 엑기스”, “약초 추출물”, “약용식물 엑기스”  (2) 의약품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예: “한방성분 추출물” | 화장품에서 특정성분 특기표시에 대해  각 도도부현 위생주관부(국)장 귀하  1985년 9월 26일  후생성 약무국 감시과장  표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취급하기로 한다.  I. 취급  1. 특기표시가 인정되지 않는 사항  (1) “생약 엑기스”, “약초 추출물”, “약용식물 엑기스”와 같이 명칭에 “약” 글자가 포함되는 것.  (2) “한방성분 추출물”과 같이 의약품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2. 특기표시 해도 문제없는 사례  “식물성분”, “식물 추출물”, “천연식물 엑기스” 등  3. 상기 1 및 2 이외의 사례  (1) 배합목적을 병기하면 표시해도 무방하다 더불어, 배합목적은 화장품에 대해 효능효과의 표현 범위이며 사실일 것.  (2) 사진, 디자인(영문 등의 표시 포함)에 대해서는 주변에 “OO(ΔΔ로서 배합)”으로 기재한다. |

II 화장품에서의 특정성분 특기표시(Q&A)

|  |  |  |  |  |
| --- | --- | --- | --- | --- |
| 신규  번호 | 신규 | | 기존 | |
| 질문사항(Q) | 답변(A) | 질문사항(Q) | 답변(A) |
| 1 | 1 특정성분 특기표시란 무엇인가? | 화장품에서의 광고나 포장에 있어서 상품에 배합된 성분 중 특성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다. | 1 특정성분 특기표시란 무엇인가? | 상품에 배합된 성분 중 특히 호소하고자 하는 성분만을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것이다. |
| 2 | 5 배합성분의 전체를 표시할 때는 특기표시로 하는가? | 배합성분 전체 성분을 동등하게 표시하는 한 특기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배합성분 전체를 표시할 때는 특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좋다. | 전체 성분을 동등하게 표시하는 한 특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3 | 3 배합된 성분을 특기표시한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가? | 1) 화장품이 아니라는(의약품적) 인상을 줄 수 있다.  2) 통상의 화장품보다 성분적으로 효과, 안전성 등의 면에서 우수하다는 오인을 줄 수 있다.  3) 해당 성분이 주요 성분인 것 같은 오인을 줄 수 있다. | 3 특기성분을 특기한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가? | 1) 화장품이 아닌(의약품적) 인상을 줄 수 있다.  2) 통상의 화장품보다 성분적으로 우수하다(효과, 안전성 등의 면에서)는 오인을 줄 수 있다.  3) 해당 성분이 주요 성분이라는 오인을 줄 수 있다. |
| 4 | 26 광고 내용 중에 특정성분이 기재된 경우에는 특기표시에 해당하는가? | 전체가 특기표시에 해당한다. | 26 광고 내용 중에 특정성분이 기재된 경우에는 특기표시에 해당하는가? | 광고 중의 표현은 모두 특기표시가 된다. |
| 5 | 2 화장품의 외부 용기/포장, 또는 직접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특정 성분을 기재하는 것은 특기표시에 해당하는가? | 전체가 특기표시에 해당한다. | 2 첨부문서 등은 관계없는가? | 대상이 된다. |
| 6 | 37 특정성분을 외국어로 표시하는 것은 특기표시에 해당하는가? | 외국어와 일본어를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기표시에 해당한다. | 37 영문표시는 특기표시에 해당하는가? | 영어와 일본어를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I “취급” 3 “상기 1 및 2 이외의 사례”의 (2)를 참고한다. |
| 7 | 23 의약부외품의 경우에 대해서도 화장품에 준한 표현이라면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좋을까? | 승인을 받은 유효성분 이외의 특정성분의 특기표시에 관해서는 화장품에 준해도 무방하다 | 23 의약부외품의 경우에 대해서도 화장품에 준한 표현이라면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좋을까? | 승인을 받은 유효성분 이외의 성분의 표시에 관해서는 화장품에 준해도 무방하다 |
| 8 | 16 배합목적은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까? | 특기표시 한 성분명 앞 또는 뒤 등에 기재할 것.  주석 등을 이용해 특정성분 앞 또는 뒤 이외의 위치에 기재할 경우에는 문자 크기, 폰트, 배치, 콘트라스트, 색상, 표시시간(동영상 광고) 등에 유의하여,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6 배합목적의 기재방법은? | 성분명 앞 또는 뒤 등에 기재하여 성분과 배합목적의 대응이 되어 있을 것. |
| 9 | 24 동영상 광고에서, 특정 성분을 표시할 경우, 그 배합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 배합목적이 동영상이나 나레이션으로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되어 있을 것. 더불어, 기재방법에 대해서는 Q&A 8을 참조할 것. | 24 사례3에 해당하는 성분의 광고에 있어서 사용목적을 병기하는 방법으로서 화면을 통해 성분명, 나레이션으로 사용목적을 설명하는 것으로 좋을까? 또한 그 반대이어도 좋을까? | 화면에 성분명이 나올 때, 동시에 나레이션으로 사용목적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좋다. 또한 그 반대도 좋다. |
| 10 | 11 특정성분의 배합목적은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근거하는 표현으로서, 보습, 착색료, 착향료, 세정성분 외, 피부호보, 피부 보호성분, 자외선 방지성분, 피부긴축성분, 오일유지성분, 두피, 두발을 촉촉하게 하는 성분과, 제제기술에 근거하는 표현으로서, 코팅성분, 증점제, 제품의 산화방지제– 등의 표시여도 무방한가? | 화장품의 효능범위 개정에 대해(2011년 7월 21일자 약식발 0721 제1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장 통지)나 제제기술에 근거하여 제품의 사용감이나 제품성상 등에 관한 표현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실증되어 있다면 무방하다 | 11 화장품으로서의 배합목적이며, 의약품적 약리효과를 암시하지 않는 것으로서, 보습제, 착색료, 착향료, 세정제 외 피부보호제, 피부보호성분, 자외선방지제, 수렴제, 오일유지성분, 천연보습제, 두피, 두발을 촉촉하게 하는 성분–등의 표시여도 문제없는가? | 화장품에 대한 효능효과의 표현 범위(1980. 10. 통지, 2000. 12. 28 개정)로 사실이면 무방하다 |
| 11 | 32 답변 10에는 “화장품의 효능범위 개정에 대해(2011년 7월 21일자 약식발 0721 제1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장 통지)나 제제기술에 근거하는 표현으로 객관적으로 실증되어 있다면 문제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증이란 어떤 의미인가? 또한, 사실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사내 데이터도 되는가? | 객관적으로 실증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효능효과나 제제기술에 근거하는 표현으로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설명자료로는 사내 데이터여도 되지만,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32 답변11에는 “화장품에 대한 효능효과의 표현범위(1980.10 통지, 2000.12.28 개정)로서 사실이라면 문제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이란 어떤 의미인가? 또한 사실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사내 데이터도 되는가? | 사실이란 해당 효능효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설명자료로는 사내 데이터이어도 되지만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12 | 8 생약명이더라도 배합목적을 병기하여 생약 등의 문자를 넣지 않으면 특기표시를 해도 무방한가?  (예) 천연식물 율무 엑기스(보습성분) 알로에 엑기스(보습성분) | 무방하다.  단, I “유의사항”의 2 “특기표시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와 같이 명칭에 “약” 글자가 포함되는 것이나 의약품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 | 8. 생약명이더라도 배합목적을 병기하여 생약 등의 문자를 넣지 않으면 무방한가?  (예) 천연식물 율무 엑기스(보습제) 알로에 엑기스(보습제) | 무방하다 |
| 13 | 9 특정성분의 특기표시로서 다음과 같은 예시도 무방하다고 생각해도 되는가?  (예) 캐모마일 엑기스(천연식물 보습성분) 배합 | 특기성분의 유래와 함께 배합목적을 기재하는 것은 무방하다 | 9. “알로에 엑기스(천연식물 보습제) “천연식물 보습제로서 알로에 엑기스 배합” 중 어느 것도 무방한가? | 무방하다 |
| 14 | 19 배합목적의 기재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현이라면 무방하다고 생각해도 되는가?  알로에 엑기스가 피부에 윤기를 부여합니다.  윤기 성분 콜라겐을 배합  피부에 윤기를 줍니다(수세미 엑기스 배합)  알로에 엑기스를 배합한 화장수입니다. | ~ 배합목적이 기재되어 있어, 유효성분인 것 같은 오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배합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 | 19 엑기스류의 표시에 대해  엑기스류의 표시에 관해 다음과 같은 표현이면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되는가?  알로에 엑기스가 피부에 윤기를 주어 건조를 방지합니다.  윤기 성분 알로에 엑기스를 배합  피부에 윤기를 주어 건조를 방지합니다. (알로에 엑기스 배합)  알로에 엑기스(보습제)가 피부에 윤기를 주어 건조를 방지합니다.  피부에 윤기를 주는 알로에 엑기스를 배합했습니다.  윤기의 알로에 엑기스, 오이 엑기스, 수세미 엑기스가 피부에 윤기를 주어 건조를 방지합니다.  알로에 엑기스를 배합한 화장수입니다. | ~ 무방하다  불가하다. |
| 15 | 21 제제기술에 근거하여 제품의 사용감이나 제품성상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해도 되는가?  스쿠알렌 배합에 의해 부드럽게 발리는 가벼운 감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크 파우더 배합(부드러운 성분) | ~ 제제기술에 근거하는 화장품으로써 배합목적이 기재되어 있어, 유효성분과의 오인이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 | 21 호호바유, 밀랍, 라놀린 등의 크림 유액 등에 기제로 배합되어 있는 성분 및 메이크업 화장품에 배합되어 있는 분말류에 대해  크림/유액 등에 기재로 배합되어 있는 유분, 납류 등의 성분 및 메이크업 화장품에 배합되어 있는 미립자 타르크, 실크 파우더 등의 성분에 관해 다음과 같은 표현이면 무방하다고 생각해도 되는가?  피부에 윤기를 주어 건조를 방지합니다. (호호바유 배합)  호호바유, 라놀린이 피부에 윤기를 주어 건조를 방지합니다.  피부에 윤기를 주는 호호바유, 라놀린을 배합했습니다.  미립자 타르크가 자외선을 차단하거나, 선번에 의한 주근깨 기미를 방지합니다.  실크 파우더 배합에 의해 잘 펴 발리는 가벼운 감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호바유 배합 크림입니다. | ~ 무방하다  불가하다. |
| 16 | 17 “에모리언트 성분으로서 OO 배”" 혹은 “트리트먼트 성분으로서 OO 배합”은 되는가? | 유효성분으로 오인하지 않기 때문에 무방하다 | 17 “에모리언트 성분으로서 OO 배”" 혹은 “트리트먼트 성분으로서 OO 배합”은 되는가? | 무방하다 |
| 17 | OO 의약부외품 등의 유효성분으로 배합될 수 있는 성분을 화장품 성분으로 특기표시 할 경우,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가? | 의약부외품 등의 유효성분으로서 배합될 수 있는 성분을 특기할 경우,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한 배합목적을 기재해야 한다.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성분인 것 같은 오인을 주어 약리작용 등을 암시하게 하지 말 것.  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일 것.  객관적으로 실증된 사실에 근거할 것.  더불어, 유효성분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성분을 특기표시 하면 마치 그 성분이 유효성분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배합목적도 포함하여 광고전체로서 표현에도 충분히 주의할 것. | (신설) | (신설) |
| 18 | OO 의약부외품 등의 유효성분으로서 배합될 수 있는 성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해도 되는가?  (1) 피부 트러블을 방지하는 성분 비타민 A, E를 배합  (2) 글리틸리틴산 디칼륨(소화제) 배합 크림입니다. | (1) 비타민A, E 등 의약부외품 등의 유효성분으로서 배합될 수 있는 성분을 표현할 경우에는 광고를 하는 자가 Q&A17의 A에 근거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특히, 특기표시 뿐 아니라, 광고전체적으로 유효성분인 것 같은 오인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가하다.  (2) Q&A17의 A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 | (신설) | (신설) |

이하, 삭제.

|  |  |  |  |  |
| --- | --- | --- | --- | --- |
|  | (삭제) | (삭제) | 4. 지정성분의 표시와 관계는? | 지정성분의 표시와는 관계없다. |
|  | (삭제) | (삭제) | 6 답변1의 “눈에 띄기 표시한다”란 어떤 것인가? | 특정성분만을 다른 문자와 띄어 놓거나 색상을 바꾸거나 틀로 감싸거나 고딕 혹은 큰 문자로 하는 등이 포함된다. |
|  | (삭제) | (삭제) | 7 문장 중에 성분명을 기재하는 것은 특기에 해당하지 않는가? | 답변6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삭제) | (삭제) | 10 비타민 등이더라도 화장품으로서 배합목적이 부기되어 있으면 문제없는가?  (예) 비타민E(항산화제) | 화장품에 대한 효능효과의 표현범위(1980.10 통지, 2000.12.28 개정)로서 사실이면 무방하다 예의 “항산화제”는 “제품의 항산화제”로 고치면 무방하다 |
|  | (삭제) | (삭제) | 12 다음과 같은 예시라면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되는가?  1) 천연보습성분 식물추출액 (알로에 엑기스, 자작나무 엑기스) 배합  2) 천연식물 보습성분(카모마일 엑기스, 금잔화 엑기스, 로즈마리 엑기스, 보다이주 엑기스) 배합 | 무방하다 |
|  | (삭제) | (삭제) | 13 배합목적을 병기하지 않고 고급 알코올계 샴푸, 프로틴 샴푸, 아미노산계 샴푸로 표시해도 되는가? | 무방하다 |
|  | (삭제) | (삭제) | 14 답변 10례 중 예를 들면 “선번을 방지한다” “피부를 보호한다” “건조를 예방한다” “피부 트러블을 방지한다” “피부에 윤기를 준다” “모발의 정전기를 방지한다” 등을 각각 “자외선 흡수제(방지제)” “피부보호제” “피부트러블 방지제” “보습제” “정전기방지제”와 같이 기재해도 되는가? | 무방하다 |
|  | (삭제) | (삭제) | 15 배합목적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는 “취급”의 2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 개별성분이 아닌 통괄적 성분의 경우이며 “식물성분” “식물추출액” “해조엑기스” “동물성분” “허브엑기스” 등이다. |
|  | (삭제) | (삭제) | 18 비타민 등의 표시에 대해  비타민 등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되는가?  비타민A, D가 피부 트러블을 방지합니다.  피부 트러블을 방지하는 성분 비타민 A, D를 배합  건조한 공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피부 트러블을 예방합니다. (비타민 A, D 배합)  비타민 A, D(피부 트러블을 방지하는 성분)을 배합하여, 윤기 있는 촉촉한 피부를 유지합니다.  비타민C(제품의 산화방지제) 배합 크림입니다.  글리틸리틴산 모노암모늄(소화제) 배합 크림입니다. | ~ 불가하다.  무방하다  불가하다. |
|  | (삭제) | (삭제) | 20 콜라겐, 아미노산, 히알루론산, 프로틴, 글리세린 등의 보습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콜라겐, 아미노산 등의 보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현이라면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되는가?  피부에 윤기를 주어 건조를 예방합니다. (콜라겐, 아미노산 배합)  콜라겐, 아미노산이 피부에 윤기를 부여해 건조를 예방합니다.  히알루론산, 프로틴(보습제)이 피부에 윤기를 주어 건조를 방지합니다.  피부에 윤기를 주는 프로틴, 글리세린을 배합했습니다.  겨울철 차가운 공기나 냉방 등의 건조한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십시오. 아미노산, 히알루론산을 배합한 OO 크림이 피부에 윤기를 주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합니다. | ~ 무방하다 |
|  | (삭제) | (삭제) | 22 화장품에 첨부하는 설명서의 내응으로서, 아래 원안에 배합성분을 표시한 경우, 사례 1~4의 내용표현이라면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되는가?  원안(배합성분의 표시가 없는 것)   * 정전기를 억제해, 부드럽게 빗질할 수 있고, 갈라지거나 끊긴 모발을 방지하는 등 상처 난 모발용 트리트먼트입니다. * 모발을 촉촉하고 유연하게 적절한 수분와 유분을 보충합니다. * 모발의 뿌리에서 끝까지 윤기 있는 헤어 스타일을 만듭니다. * 비듬, 가려움을 방지하며 건강한 모발을 유지합니다. |  |
|  |  |  | 사례1   * 정전기를 억제해, 부드럽게 빗질할 수 있고, 갈라지거나 끊긴 모발을 방지하는 등 상처 난 모발용 트리트먼트입니다. * 모발을 촉촉하고 유연하게 적절한 수분와 유분을 보충합니다. * 모발의 뿌리에서 끝까지 윤기 있는 헤어 스타일을 만듭니다. * 비듬, 가려움을 방지하며 건강한 모발을 유지합니다. (양이온 유도체, 레시틴, 홍화씨유, 양이온 폴리머, 알로에 엑기스) | 1 무방하다 |
|  |  |  | 사례2   * 정전기를 억제해, 부드럽게 빗질할 수 있고, 갈라지거나 끊긴 모발을 방지하는 등 상처 난 모발용 트리트먼트입니다. (양이온 유도체, 레시틴) * 모발을 촉촉하고 유연하게 적절한 수분와 유분을 보충합니다. (홍화씨유, 알로에 엑기스) * 모발의 뿌리에서 끝까지 윤기 있는 헤어 스타일을 만듭니다. (양이온 폴리머) | 2 무방하다 |
|  |  |  | 사례3   * 양이온 유도체가 정전기를 억제해, 부드럽게 빗질할 수 있고, 레시틴이 모발을 보호하여 갈라지거나 끊긴 모발을 방지하는 등 상처 난 모발용 트리트먼트입니다. * 모발을 촉촉하고 유연하게 적절한 수분와 유분을 보충하는 홍화씨유, 알로에 엑기스를 배합했습니다. * 양이온 폴리머가 모발의 뿌리에서 끝까지 윤기 있는 헤어 스타일을 만듭니다. | 3 무방하다 |
|  |  |  | 사례4   * 정전기를 억제해, 부드럽게 빗질할 수 있고, 갈라지거나 끊긴 모발을 방지하는 등 상처 난 모발용 트리트먼트입니다. * 모발의 뿌리에서 끝까지 윤기 있는 헤어 스타일을 만듭니다. * 비듬, 가려움을 방지하며 건강한 모발을 유지합니다.   성분  세탄올, 파라벤, 황색4호, 양이온 유도체, 레시틴, 홍화씨유, 알로에 엑기스, 양이온 폴리머, 비타민E | 4 무방하다 |
|  | (삭제) | (삭제) | 25 I “취급”의 1 “특기표시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하는 성분에 대해 특기하지 않으면 표시해도 되는가? | 특기가 아닌 경우라도 표시는 불가하다. |
|  | (삭제) | (삭제) | 27 “알로에”는 배합목적을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조”의 경우, 배합목적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 “해조”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답변3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  | (삭제) | (삭제) | 28 A7에 의하면 문장 중에 성분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특정성분만 다른 문자와 띄어 놓거나, 색상을 바꾸는 등 하지 않는 한 특기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질문사항 19의 “알로에를 배합한 화장수입니다”나 질문사항 21 “호호바유 배합 크림입니다”가 특기표시로 여겨지는 이유는? | 답변7에서 말하는 문장이란 표면 전체적으로 보아 상당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특정성분 표시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말하며, 단지 문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기표시가 되지 않는 조건은 아니다. |
|  | (삭제) | (삭제) | 29 화면에서 배합목적과 성분을 병기할 경우에는 나레이션으로 배합 목적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가? | 성분과 동시에 눈에 띌 정도로 배합목적이 병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나레이션으로 배합목적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24의 답변 참조) |
|  | (삭제) | (삭제) | 30 비타민C를 피부보호제라고 표현해도 되는가? | 인정되지 않는다. 의약부외품의 유효성분으로 인정되고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약리작용을 암시하는 듯한 배합목적을 기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  | (삭제) | (삭제) | 31 부외품의 경우, 질문사항 18의 ~와 같은 표현을 해도 되는가? | 비타민A, D가 유효성분으로 사실이면 된다. |
|  | (삭제) | (삭제) | 33 장원기 해설서의 기재 범위라면 사실로 해석해도 되는가? | 해설서는 각 성분 작용 등의 기재에 있어, 화장품용 용도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 및 배합량 또는 다른 배합성분에 의해 효과 유무도 다르다고 생각되므로 해설서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
|  | (삭제) | (삭제) | 34 “비타민E”라는 표시는 문장 속이라면 배합목적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가? | 광고중 이외로서 특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
|  | (삭제) | (삭제) | 35 화장유류로서 허가를 받은 올리브유, 동백유, 스쿠알렌이 100%, 60%와 같은 제품인 경우도 배합목적을 기재해야 하는가? | 종류별 명칭 “화장용 유류”의 표시가 있는 등 목적성에 오인이 없는 한 무방하다 |
|  | (삭제) | (삭제) | 36 한편에 생약명(예, 의이인) 및 그 효능효과를 기재하고, 이것과 실선 등으로 구분하여, 예를 들면, 그 아래에 해당 생약을 포함하는 화장품에 대해 해당 생약의 식물명(예의 경우, 율무)을 기재한 광고를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가? | 전체적으로 하나의 광고로 본다. 따라서, 예를 들면, 생약의 해설에 있어서 화장품의 효능범위를 일탈한 효능을 기재하면 불가하다. |
|  | (삭제) | (삭제) | 38 “바이오 성분”이라는 표현을 광고물 중에서 이용한 경우, 배합목적을 기재해야 하는가? | 배합목적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이오 성분의 내용도 기재할 것. |